



제428 회국회(임시회)
제1 차보건복지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 추가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33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 추가	3

I. 개요

1.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33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희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3. 25.
- (3) 회 부 일 : 2025. 3.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종류로 교육지원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비, 생활비 등이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등교육의 경우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 또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

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대상에 대학생을 추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 라. (생략) 마. 교육지원: <u>초·중·고등학교</u> 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u>비용 지원</u> <단서 신설> 바. (생략) 2. (생략) ②·③ (생략)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 -----. 1.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u>초·중·고등학교</u> <u>생·대학생</u> ----- ----- ----- <u>비용 지원</u> . <u>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u>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¹⁾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의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²⁾

- 이 중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기준, 초등학생은 12만 7,900원, 중학생은 18만 원, 고등학생은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을 지원하도록 고시³⁾하고

1)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3)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2호)

있으며, 같은 해 713명을 대상으로 1억 1,233만원을 지원하였음.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⁴⁾

< 시행령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수업료 및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각각 고지한 금액)

4)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최근 5개년 교육지원 통계 >

(단위: 건, 명, 천원)

구분		긴급복지지원 전체	교육지원			
			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2020년	지원건수	840,074	906	205	238	463
	지원금액	508,516,814	294,171	99,711	85,080	109,380
2021년	지원건수	673,333	652	163	178	311
	지원금액	419,395,242	212,328	74,264	65,601	72,463
2022년	지원건수	491,824	534	105	145	284
	지원금액	343,248,458	89,359	24,567	26,997	37,795
2023년	지원건수	518,507	716	151	193	372
	지원금액	421,630,942	115,040	32,257	34,557	48,226
2024년	지원건수	496,535	713	130	190	393
	지원금액	460,009,934	112,337	27,820	34,200	50,317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추출(지원금액: 국비+지방비)하였으며,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학용품비별 구분은 불가

□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지원의 혜택을 대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학비가 높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대학생의 주 연령대인 2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⁵⁾

5)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최근 5개년, 20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9세	104,837	125,510	135,124	132,209	133,090

자료: 통계청, ‘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재구성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등교육(대학교)은 선택교육으로서, 헌법 및 법률에서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초·중·고등학교)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⁶⁾ 및 「교육기본법」 제8조⁷⁾에 따르면, 6년의 초등교육(초등학교)과 3년의 중등교육(중·고등학교)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고등교육(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⁹⁾에서 입학금 면제 및

6)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7)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9) 「고등교육법」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급식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등록금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음.

결국, 긴급지원(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지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학용품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대학생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육 지원체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휴학과 같은 제도를 통해 교육일정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고등교육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긴급지원의 목적 및 원칙¹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3년)은 의무교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학의무¹¹⁾가 있고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10)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1)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교육 단절 등이 발생하더라도 학생이 교육일정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없으므로 교육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고등교육은 통상 학기제로 운영되고 법률에서 휴학¹²⁾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교육일정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초·중등교육만큼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성인으로 근로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용품비 등을 지원할 필요성도 크지 않아 보임.

□ 셋째, 국가 장학금 제도 등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원 효과성 및 법 체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¹³⁾을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12)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13)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계지원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¹⁴⁾에서, 교육지원으로서 국가장학금과 같이 평균 710만원¹⁵⁾에 달하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¹⁶⁾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교육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학제도로써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이라는 성적 기준이 있고, 등록한 후 휴학할 경우에는 복학 첫학기 지원이 불가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있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에 따르면,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6,097,773원임.

15) 2025년 기준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710만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16)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25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

국가장학금(4조 4,830억원*)		대학자체 노력		
소득구간	I 유형 (3조 292억원)	다자녀 (1조 1138억원)	표유형 (3,400억원)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2,600억원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1구간	570만원	570만원 (셋째 이상 전액)		800억원 (지역인재 장학금)
2구간				
3구간				
4구간	420만원			
5구간	480만원 (셋째 이상 전액)			
6구간				
7구간				
8구간	350만원			
9구간	450만원 (셋째 이상 전액)			
10구간				
	100만원	135만원 (셋째 이상 전액)		
		200만원 (셋째 이상 전액)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대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나, 한정적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필수 의무교육(초·중등 교육) 대상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으로의 확대는 추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장학금 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생의 경우 만 19세 이상으로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어 확대 지원 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복지제도에 의존할 우려가 있고, 재정 여건 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예산지원이 없을 시 도움이 절실한 기존 대상에 대한 지원이 더욱 부족해 질 수 있음.

긴급복지 대상 가구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국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서 조항을 근거로 혜택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대학생 학비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기존 사업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대학생까지의 교육지원 확대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음.

* 경상북도, 경기도 양주시

문 의 처
02)6788-5497